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특구 내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신설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98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관광특구 내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신설	3
※ 참고자료	8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8
2. 관광특구 지정 현황	9
3. 관광특구 특례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6. 7. 10.

다. 회 부 일: 2026. 7.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Ⅲ. 검토의견

□ 관광특구 내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신설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심사 절차 및 체류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증(査證) 발급의 심사 절차 및 체류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¹⁾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하여 사증 및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²⁾은 일반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특구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심사가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1)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심사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관광특구 내 외국인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및 관광특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관광특구 내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관광특구 내 영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및 체류기간의 특례 도입 필요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 필요성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는 비자·출입국·이민정책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전속적 재량권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체류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관광특구별 관광산업 및 인력 수급 현황의 차이에 따른 일률적인 심사·체류 기준 적용의 한계, ② 관광특구 외 타

지역 및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③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은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에서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생략)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생략)

③ (생략)

다음으로, 특례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74조제4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营业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구체적인 업종 등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재임기간	구직(D-10)	1년
공무(A-2)	공무수행기간	교수(E-1)	5년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회화지도(E-2)	2년
		연구(E-3)	5년
문화예술(D-1)	2년	기술지도(E-4)	5년
유학(D-2)	2년	전문직업(E-5)	5년
기술연수(D-3)	2년	예술홍행(E-6)	2년
일반연수(D-4)	2년	특정활동(E-7)	3년
		계절근로(E-8)	8개월
취재(D-5)	2년	비전문취업(E-9)	3년
종교(D-6)	2년	선원취업(E-10)	3년
주재(D-7)	3년	방문동거(F-1)	2년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2 11. 기업 투자(D-8)란의 가목 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거주(F-2)	5년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 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3년
	영 별표 1의2 11. 기업 투자(D-8)란의 나목 · 다목에 해당하는 사 람 : 2년	결혼이민(F-6)	3년
		기타(G-1)	1년
		관광취업(H-1)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무역경영(D-9)	2년	방문취업(H-2)	3년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2. 관광특구 지정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특구명	지정 지역(소재지)	면적 (km ²)	최초 지정일
서울(8)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20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9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송인동 4거리)	0.54	2006.03.30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75	2012.03.15
	강남마이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홍대 문화예술 고터·세빛	마포구 홍대 일대(서교동, 동고동, 합정동, 상수동 일원)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및 고속터미널 일대	1.13 0.84	2021.12.02. 2024.12.26
부산(3)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3	19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양동·동광동·대창동·보수동 일부	1.08	2008.05.14
	동구 크루즈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및 초량동 일원	1.48	2026.07.08
대구(1)	동성로	성내1·2·3동, 남산1·2동, 대봉1동, 삼덕동 일원	1.16	2024.07.22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5)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2015.08.06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1.83	2016.01.15
	통일동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3.01	2019.4.30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27	19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53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웅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6.89	2007.09.28
경북(4)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포항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	2.41	2019.8.12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4개 시·도 37개소				

3. 관광특구 특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항목	내용 및 근거
영업제한 미적용	○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 제74조제1항> *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공개공지 사용	○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종합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차마 통행금지	○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4조제3항>
카지노 허가요건	○ 제21조(허가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제21조>
옥외광고물 완화	○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관광특구)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의료 광고에 관한 특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6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8호>
지구단위 계획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 공공택지 등에서 공동주택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 <주택법 제57조제2항제3호>
면세판매장 지정 시 특례	○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여도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2항>